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나온 정부**

# 설 명 자 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총 0 (붙임 2쪽 포함)/사진 없음
배포일시	2020. 5. 29 .	담당부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체류관리과
담당과장	이진곤 02) 2110-4061	담당자	사무관 김명훈 02) 2110-4062

## 등록외국인 재입국허가제 및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 관련 설명자료

- 법무부는 국내에 외국인등록을 한 장기체류외국인의 재입국 요건 강화를 통해 외국인의 한국↔위험지역 간 이동 및 감염원 신규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입국허가 면제 정지 · 재입국허가제 시행’ 및 ‘재입국자 진단서 소지 의무화’ 조치를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이와 관련하여, 국내 체류 외국인 및 관계기관의 이해를 돕고자 별도 설명자료를 배포하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부는 조치가 정확하고 신속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대외 안내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이행할 예정이며,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와 지속적으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 국내 유입 차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붙임: 관련 주요 질의응답 1부. 끝.

## 목 차

1. 이번 제도의 시행 취지는 무엇인지? ..... 2
2. 재입국 허가 신청절차, 제출서류, 수수료는? ..... 2
3. 재입국 허가 기준은? ..... 3
4. 재입국 시 제출할 진단서의 종류 및 발급기관? ..... 3
5. 출국일로부터 48시간 계산방법은? ..... 3
6. 폐렴 증상 확인을 위하여 X-ray 촬영이 필요한지? ..... 4
7.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한 허가가 가능한지? ..... 4
8. 기업활동 등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내용이 있는지? ..... 4
9. 조치 시행 전에 재입국허가 면제를 받아 출국한 경우? .. 5
10. 격리 등 방역조치는 그대로 적용되는지? ..... 5
11. 승무원 및 선원도 적용되는지? ..... 5

① 이번 제도의 시행 취지는 무엇인지?

- 올해 1월 이후, 국내에서 장기체류 중인 외국인이 출국하였다가 코로나 19에 감염되어 재입국한 사례가 78건 확인되었음(5. 27. 기준)
- 정부는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국민의 출입국을 자제시키고 있음
  - 또한 단기체류 목적 비자를 무효화하고 모든 단·장기비자 신청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단기 체류 목적 방문 외국인의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기존의 장기체류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외에는 별도 조치가 없었음
-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이 불요불급한 출입국을 자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여타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WHO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을 포함한 범정부적 논의를 거쳐 금번 조치를 시행한 것임

② 재입국허가 신청절차, 제출서류, 수수료는?

-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여권, 외국인등록증, 통합신청서, 신청사유,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동의서 제출 및 수수료(3만 원)\* 납부
  - 다만,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사람으로서 '진단면제서' 발급 대상자는 진단서 소지 동의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진단면제서 관련 9번 참조)

\* 신청절차, 제출서류, 수수료 등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 참고

③ 재입국허가 발급 기준은 무엇이며 불허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재입국허가 여부는 체류 및 출국 목적, 방역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나, 출국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임

④ 재입국 시 제출해야 하는 진단서의 종류와 그 진단서는 어디서 발급 받아야 하는지?

- 진단 자격을 갖춘 공인 의료기관에서 모두 가능하며, 특정한 서식을 요구하는 것은 아님. 진단서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발급되어야 함이 원칙이나, 현지 사정상 국문 또는 영문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지 언어\*로 발급된 경우에도 인정

\* 이 경우 국문 또는 영문 번역서 첨부 필요(공증 불필요, 번역서 서식은 하이코리아 ([www.hikorea.go.kr](http://www.hikorea.go.kr)) 홈페이지 참조)

※ 현재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 시 유사한 형식의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 하고 있으므로, 방문지 관할 한국 공관에 문의 바람

⑤ ‘출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발급’된 진단서만을 인정한다고 하는데, 48시간 계산 방법은?

- “출국일로부터 48시간이내”는 ‘한국으로 출발하는 출국일로부터 역산하여 2일 이내를 의미하며(휴일 제외),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 (예시) 6월 10일 21:00에 출발하는 경우, 6월 8일 ~ 9일 중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됨

⑥ 진단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폐렴 증상 유무 확인을 위하여 엑스레이 촬영이 필수적인지?

- 코로나19 관련 증상 유무가 기재된 모든 진단서를 인정함. 폐렴 증상 여부가 포함되면 족하며, 엑스레이 촬영은 없더라도 무방함

⑦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발생하여 급하게 자국으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 바로 재입국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 가족 사망 등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
-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출국 당일에 공항에서도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임
- 예약제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체류 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청하는 경우 사전 온라인 예약(www.hikorea.go.kr) 필요. 다만, 제도시행 초기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6월 한달 동안은 예약 없이 신청가능(공항만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는 출국 당일에 예약 없이 신청 가능)

\* 방문예약 필요 관서 : 서울, 서울남부, 인천, 수원, 양주,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청주, 안산, 세종로, 평택, 천안, 고양(총 15곳)

※ 다만, 일시적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공항에서는 출국자가 몰려 혼잡할 수 있으므로 출국일에 일찍 도착하여 관련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

- 또한, 6월 중순까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발 중임

⑧ 필수적인 기업·취재활동이나 기타 경제활동 등에 지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있는지?

-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경우에는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이 면제됨

- 또한,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의 목적으로 출국한 후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진단면제서'를 발급하여,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을 면제함으로써 기업활동 등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임

\* 진단면제서 신청 절차에 관하여는 하이코리아(hikorea.go.kr)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⑨ 5.31. 이전에 재입국허가 면제로 출국했다가 6.1. 이후에 입국하는 장기체류외국인은 어떻게 되는지?

- 이번 조치는 6. 1. 이후 출국하여 재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이 적용 대상임
- 따라서 5. 31. 이전에 출국했다가 6.1. 이후 입국한 외국인도 재입국허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입국할 수 있으며, 진단서를 소지하지 않더라도 재입국이 가능함

⑩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하는 경우 코로나19 검사, 격리 등 방역 조치는 그대로 적용되는지?

- 재입국허가를 받고 다시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격리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조치임
-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검역 당국의 방침에 따라 14일간 자가 또는 별도 시설에 격리시키는 조치 시행중이며, 이번 조치와 무관하게 격리 등 방역 당국의 조치는 그대로 유효함

⑪ 승무원 또는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는 경우에도 재입국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또한 재입국 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 승무원 · 선원 신분으로 출입국하는 등록외국인은 재입국허가가 면제되며, 재입국 시 진단서 소지 의무로부터도 면제됨

#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 관리강화관련 상주외신 질의 답변

'20. 5. 28.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안 내>

법무부는 기업활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 소지자의 입국 전 진단 의무를 면제하였습니다. 다만, 기업활동, 취재활동, 학술활동 등을 위하여 단기 출장 시 현지에서 진단을 받기가 어렵고, 격리면제서를 발급받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제도를 보완하여 시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 내용 요약]

기존 방안	보완 사항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재입국 전 진단 면제	재외공관 발급 격리면제서 소지자+ 기업, 취재, 학술(연구) 등 목적 3주 이내 출장자로서 법무부가 발급한 진단면제서 소지자* 재입국 전 진단 면제

이번 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취합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 1. 이러한 조치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모든 해외입국자가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14일간 자가격리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조치가 어떤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까?

☞ 코로나19의 전세계적 확산과 함께,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이 출국 후 해외에서 감염되어 입국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였음(5.27. 기준 78명).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정부는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등 국민의 출입국을 자제시키고 있으며, 단기체류 목적 비자를 무효화하고 모든 단·장기비자 신청자에 대하여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이에 더하여 단기체류 목적 방문 외국인의 시설격리를 의무화하는 등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기존의 장기체류외국인의 출입국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외에는 별도 조치가 없었음. 이에 따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이 불요불급한 출입국을 자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여타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WHO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범정부 논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금번 조치를 시행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 왜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나요? 본 조치가 인종차별주의로 인식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문) Why is this only aimed at foreigners? Do you believe that this measure could be perceived as racist?

- ☞ 이미 지난 4월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신청단계에서 진단서를 받고 있는 것을 방역당국을 비롯한 범정부 논의를 거쳐 기존의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자에 대하여 확대 적용한 것임. 또한 국제법과 헌법에 따라 국민은 입국의 권리가 있으나 외국인은 그렇지 않음. 공표한 내용 중 '재외동포(F4)'가 제외된 것은 현행 재외동포법의 규정(제10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것임.

## 3. 재입국허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원문) Would there be any circumstance where a re-entry permit would not be granted by the immigration department?

- ☞ 재입국허가 여부는 체류 및 출국 목적, 방역적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예정이나, 출국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속하게 허가할 예정임.

## 4. 부처가 의미하는 현지의 "유효한 의료기관"은 어떤 곳입니까?(31번 유사)

(원문) What does the Ministry regard as a "recognized medical institution" in a foreign country?

- ☞ 현지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진단서 발급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한국 비자 신청 시 공관에서도 동일한 진단서를 요구 하고 있음

## 5. 외국인들에게 코로나19를 대응 중인 국외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는 것이 사실상 감염 위험성을 더 높인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까?

(원문) Does the Ministry accept that asking foreigners to go to medical institutions in many countries which are fighting Covid-19 might actually put them at more risk of getting the virus?

- ☞ 4월부터 비자신청 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였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보고된 바 없으며, 의료기관 접근 자체가 어려운 국가 방문은 당분간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방역체계가 붕괴되거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려운 국가에의 방문은 자제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 다만,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였거나 필수적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에 해당하고 출국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진단면제서'를 발급하여,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을 면제하고 기업활동 등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임

## 6.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국가 내 의료기관의 과중한 업무로 인해 진료예약이 어렵거나,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나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원문) Does the Ministry understand that getting an appointment at a medical institution in countries fighting COVID-19 where medical workers are already too busy can often prove difficult if not impossible? What will happen in this case?

☞ 위 5번 답변 참조

## 7. 격리면제서는 어떻게 취득할 수 있습니까?

(원문) How does a person obtain an Isolation Exemption Certificate?

- ☞ 전 세계 한국 재외공관에서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 출국 전에 대한민국 관계부처로부터 공문을 발급받아 공관에 제출하거나, 방문 예정 공관으로 관계부처가 협조 공문을 발송하여 공관에 제출된 경우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8. 장기 체류자들은 진단서 제출 후에도 2주간의 격리가 필요합니까? (25번동일)

(원문) Do long-term stayers still have to go through two week quarantine even with submission of diagnosis?

☞ 이번 조치와 별도로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른 자가격리 조치 필요

(#9~11 영문없음)

## 9. D5-Visa(언론)의 경우 면제될 가능성은 없는 건가?

☞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였거나, 필수적 취재활동 등에 해당하고 출국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진단면제서'를 발급하여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을 면제하고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임

10. 보도자료 3페이지, '출국일로 부터 48시간이내'는 출국시간 기준으로 48시간이내란 뜻인가?

- ☞ "출국일로부터 48시간이내"는 '한국으로 출발하는 출국일로부터 역산하여 2일 이내를 의미하며, 휴일은 산입하지 않음. 부득이한 경우 3일(휴일 제외) 내에 발급받은 경우에도 인정
- ※ (예시) 6월 10일 21:00에 출발하는 경우, 6월 8일~9일 중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됨

11. 보도자료 3페이지, 해당 진단서에는 발열 기침 오한 두통 폐렴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외 어떤 증상이 포함되나? 또, 폐렴 증상은 엑스레이 촬영이 필수인데 엑스레이로 폐렴이 확진 된 경우를 말하는지?

- ☞ 코로나19 관련 증상을 포함하는 모든 진단서는 가능함. 의사의 진단으로 폐렴 증상 여부가 포함되면 족하며, 엑스레이 촬영은 없더라도 무방함

12. 대부분의 한국 입국자는 한국국적자로, 이 규제는 한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 조치는 전적으로 인종기반으로 보이는데, 이것이 어떻게 정당화 될 수 있습니까? (20,30번)

(원문) How is this new implementation justified - it seems it is entirely based on race as most of the traveller coming into Korea are from Korean nationality and this wont apply to them ?

- ☞ (2번 질문 답변 참조) 이미 지난 4월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신청단계에서 진단서를 받고 있는 것을 방역당국을 비롯한 범정부 논의를 거쳐 기존의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자에 대하여 확대 적용한 것임. 또한 국제법과 헌법에 따라 국민은 입국의 권리가 있으나 외국인은 그렇지 않음. 공표한 내용 중 '재외동포(F4)'가 제외된 것은 현행 재외동포법의 규정(제10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것임.

13. 본 조치는 단기출장을 불가능하게 하여 비즈니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한국 재입국을 위해 진료를 받는 것이 모든 나라에서 가능하지 않으며, 출장으로 인해 단 며칠만 출국한 상황에서는 더욱 불가능합니다. 단기 출장자 대상으로 재입국 허가 면제를 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원문) This will deeply affect businesses as its render short term business travel impossible, especially the process to get a test on the way back to South Korea as the test is not available in every country and it is close impossible to get a test done if the business traveler only travels for a few days - do you plan to implement an exemption for short business travels?

-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이 불요불급한 출입국을 자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여타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WHO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을 비롯한 범정부 논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금번 조치를 시행한 것임.
- ☞ 다만,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였거나 필수적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에 해당하고 출국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진단면제서'를 발급하여,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을 면제하고 기업활동 등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임

14. 공항 및 검역소에서 이미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외국인 거주자가 재입국 시)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코로나19 감염 예방에 어떤 부수적인 의미를 갖나요?

(원문) What is the added value of a medical check in preventing a Covid contagion since Covid test at airport and quarantine are already in place?

- ☞ 1번 질문 답변 참조

15. (한국에) 귀국 전 건강검진을 받는 것은 한국 국적 소유자에게도 적용되나요? 혹은 외국인 거주자에게만 특별히 요구되는 건가요?

(원문) Does the request for medical check up before flying back to Korea also applies to South Korean nationals? Or is it a request discriminating only foreign residents?

- ☞ 1,2번 질문 답변 참조

**16. 친척이 사망하는 경우 등 급한 가족 경조사 발생 시에는 어떻게 되나요?**

(원문) What happens in case of emergency family situation (relatives passing away for example)?

- ☞ 특별히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재입국허가를 할 예정이며, 재입국허가는 출국 당일에 공항에서 30분 이내에 발급받을 수 있음
- ※ 다만, 일시적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공항에서는 출국자가 몰려 혼잡할 수 있으므로 출국일에 일찍 도착하여 관련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

**17. 이 조치는 문대통령이 계획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끄는 비전의 일환인가요?**

(원문) Are these measures part of President Moon's ambitious vision to lead post covid Era"?

- ☞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의 불요불급한 출입국을 자제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여타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WHO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을 비롯한 범정부 논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으로 금번 조치를 시행한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8. 이 조치는 최근 일본이 취한 규제에서 영향을 받았나요?**

(원문) Are these measure inspired by recent regulation taken by Japan?

- ☞ 관계 없음.

**19. 이러한 조치에 대해 우려를 표한 한국에 기반을 둔 외국계 기업에 한국이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원문) What is Korea message to foreign businesses based here who have expressed their concern at these regulations?

- ☞ (13번 질문 답변 참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이 불요불급한 출입국을 자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여타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WHO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을 비롯한 범정부 논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금번 조치를 시행한 것임.
- ☞ 다만,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였거나 필수적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에 해당하고 출국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진단면제서'를 발급하여,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을 면제하고 기업활동 등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임

20. 해외여행 중인 한국인과 외국인에 요청하는 의료서류가 왜 다른가요? 한국계 외국인과 비한국계 외국인에 다른 규정을 적용하는 이유가 될가요? 한국 정부는 한국인의 코로나19 감염 가능성이 다른 인종에 비해 낮다는 과학적 증거가 있습니까? (30번과 유사함)

(원문) Why are there different medical requirements for Koreans who travel abroad and foreign residents of Korea who travel abroad? Why are there different rules for foreigners of Korean ethnicity and those of non-Korean ethnicity? Does the ROK government have scientific evidence that Koreans are less likely than other races to contract the SARS-Cov-2 virus?

☞ (2번 질문 답변 참조) 이미 지난 4월부터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신청단계에서 진단서를 받고 있는 것을 방역당국을 비롯한 범정부 논의의 거쳐 기존의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자에 대하여 확대 적용한 것임. 또한 국제법과 헌법에 따라 국민은 입국의 권리가 있으나 외국인은 그렇지 않음. 공표한 내용 중 '재외동포(F4)'가 제외된 것은 현행 재외동포법의 규정(제10조제3항)에 따른 부득이한 것임.

21. '최근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체류자들이 새로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재입국한 사실이 적발됐다'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질병관리본부 집계에 따르면 해외 유입 건수는 내국인 1,072명(88.2%), 외국인(외국인 및 재외국민 포함) 143명(11.8%)입니다. 대부분의 해외 유입 사례가 한국 국민인데 왜 귀국하는 한국인은 의료 진단 요건에 해당되지 않나요?

(원문) You say that 'long term foreign stayers in Korea have recently been found to have re-entered the nation being infected with novel coronavirus'. According to today's KCDC figures, imported cases are 1072 Koreans (88.2 percent), foreigners (including both foreign citizens and Overseas Koreans) 143 (11.8 percent). Why are returning Koreans not subject to the medical diagnosis requirement when the vast majority of imported cases are Korean citizens?

☞ 1,2번 질문 답변 참조

**22. 한국 입국 48시간 전 건강증명서 발급 조건이 모든 한국 입국자에게 적용되니까? 혹은 해외에서 귀국하는 외국인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니까?**

(원문) Do the requirements to get a health certification 48 hours before flying to Korea apply to ALL travelers arriving in Korea? Or does this requirement only apply to foreign residents of Korea returning from overseas?

☞ 6월 1일 이후 출국하여 입국하려는 등록외국인만이 적용 대상임

**23. 만약 이 조치가 외국인 거주자만을 위한 것이라면, 이면의 논리가 무엇인가요? 왜 한국에서 일하고, 투자하고, 또는 가족이 있는 한국 내 외국인 거주자들만 대상이 되나요?**

(원문) If it is only for foreign residents, can you kindly let me know the logic behind this? Why are foreign residents of Korea - ie the people who work, invest and/or have families here - being specially singled out?

☞ 1,2번 질문 답변 참조

**24. 입국심사 시 외국인 거주자의 의료서류 확인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나요?**

(원문) What protocols will Immigration officials at Korean ports of entry institute to check the medical documents that are submitted by returning foreign residents upon arrival?

☞ ① 해외에서 항공기 탑승권 발권시 카운터에서 제시 확인(미제출시 발권불가) ② 입국장 도착후 입국심사대에서 제시(진위여부 등 확인) ③ 입국요건 갖출 경우 입국허가(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입국거부)

**25. 귀국하는 외국인 거주자들은 앞서 언급한 새로운 조치 외에도 기존의 검사 및 2주간의 격리조치를 받아야 합니까? (8번과 동일)**

(원문) Will returning foreign residents be required to undergo a test and undertake a 2-week quarantine be maintained, in addition to the new steps above?

☞ 이번 조치와 별도로 방역당국의 지시에 따른 격리 조치 필요

**26. 외국인 거주자가 재입국허가를 받고 진단서를 제출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원문) How long will the requirement to obtain a re-entry permit, and to submit a health form, last for foreign residents?

- ☞ 재입국허가는 전국 출입국·외국인관서에서 받을 수 있으며, 출국 당일에 공항에서도 30분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임
- ※ 다만, 일시적으로 신청자가 몰릴 경우에는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특히 공항에서는 출국자가 몰려 혼잡할 수 있으므로 출국일에 일찍 도착하여 관련 절차를 마칠 것을 권고

**27. 재입국 비자의 필요성에 대한 의학적 논리는 무엇입니까?**

(원문) What are the medical and health justifications behind the necessity of a re-entry visa?

- ☞ (1번 질문 답변 참조)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 요건 강화 필요성에 대한 방역당국의 공감대 하에서 범정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조치임

**28. 재입국 비자가 어떻게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습니까?**

(원문) How can a re-entry visa stop the spread of the virus?

- ☞ 1번 질문 답변 참조

**29. 모든 한국 입국자들이 입국 시 공항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진단서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35번 질문과 유사)**

(원문) Why is an additional medical examination necessary, since every person landing in Korea must undergo a Covid test at airport arrival?

- ☞ 1번 질문 답변 참조

**30. 왜 이 정책은 차별적이고 민족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이 정책은 해외 거주 한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차별 뒤에 숨겨진 의학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12, 20번 질문)**

(원문) Why is this policy discriminatory and based on ethnicity? (the rule does not apply to Overseas Koreans: what is the medical justification behind this discrimination?)

- ☞ 2번 질문 답변 참조

**31. "공인된 의료기관"에 대한 기준이 애매한데, 이것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무엇입니까?(4번 유사함)**

(원문) What is a "authorized medical institution"? This is very vague.

- ☞ 현재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의료기관으로서, 진단서 발급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을 의미하며, 이미 지난 4월부터 한국 비자 신청 시 공관에서라도 동일한 진단서를 요구 하고 있음

**32. 이번 조치로 국내외 사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는 한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조치가 미칠 부정적인 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원문) The business community will be strongly hit by this measure, and that might affect Korean economy. Which measures are designed in parallel to mitigate the adverse economic impact of these new measures?

- ☞ (13번 질문 답변 참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국내 장기체류외국인이 불요불급한 출입국을 자제하도록 하는 동시에 현지에서 출발하기 전에 코로나19 관련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과 여타 체류외국인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WHO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을 비롯한 범정부 논의를 거쳐 부득이하게 금번 조치를 시행한 것임.
- ☞ 다만, 격리면제서를 소지하였거나 필수적 기업·투자, 학술·연구, 취재활동 등에 해당하고 출국일로부터 3주 이내에 재입국하는 경우에는 '진단면제서'를 발급하여, 진단 및 진단서 제출을 면제하고 기업활동 등에 불필요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임

(#33~38 영문없음)

**33. 진단서 제출이 장기체류 외국인에게만 의무가 있고, 한국 국적자는 대상이 아닌 이유는 무엇입니까? 또한 A-1 ~ 3, F-4 비자 소지자와 재외공관이 발급한 '격리면제서'를 소지한 외국인 투자자 등도 예외로 되어 있는데, D-5비자(취재)가 예외에 포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 2번, 9번 질문 답변 참조

**34. 외국에서 귀국하는 한국 국민에게는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에 대한 선별적 조치로 인한 과학적 효과는 어떻게 보증되는지요?**

- ☞ 1번, 2번 질문 답변 참조

35. 현재 모든 해외 입국자는 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국시 진단서를 갖고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29번 질문과 유사)

☞ 1번 질문 답변 참조

36. 의료봉괴를 우려하는 일본에서는 일정기간 이상 발열 증상이 없는 사람의 병원 방문은 자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치가 일본을 포함, 각국의 방역 태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병원 방문에 따른 감염 위험에 대한 보상 대책이 있습니까? (5번과 유사)

☞ 5번 질문 답변 참조.

37. 재입국 허가가 필요 없는 예외 규정에서 D-5비자(취재)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K방역 홍보에 큰 역할을 하는 외신기자 (D5 소지자)에 대해서도 A-1 ~ 3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재검토 할 가능성은 있는지요?

☞ 9번 질문 답변 참조

38. 6월 1일 이후에 출국한 이후, 급한 취재로 인해 재입국해야 하는 D-5 소지 외신기자가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했어도 취재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속한 특별조치를 취할 준비가 있으신지요?

☞ 9번 질문 답변 참조

이번 조치는 장기체류외국인 재입국 요건 강화 필요성에 대한 방역당국과의 공감대 하에서 범정부 논의를 거쳐 결정된 것으로서, 국민과 국내 체류 외국인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WHO가 경고하는 2차 대유행을 대비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금번 조치를 시행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